

朝鮮前期의 身分制度

李 成 茂*

1. 身分概念

朝鮮前期의 社會身分階層은 대체로 兩班 中人 良人 賤人으로 大別될 수 있다. 이 네 개의 身分層이외에도 身良役賤이라는 良·賤中間身分層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麗末鮮初의 身分再編成過程에서 國家의 公民인 良人層을 擴大시키려는 政策에 의한 一時的인 產物이었으며 종국적으로는 良人에 編入될 身分層에 不過하였다.

이 중 中人을 제외한 兩班 良人 賤人의 身分概念은 이미 高麗時代부터 있어 왔다. 예컨대 高麗史 卷 79 食貨志 2, 戶口條에

「開城府五部及外方州縣 以百姓爲兩班 以賤人爲良人 僞造戶口者 據法斷罪」

라 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의 身分階層으로서 良身分과 賤身分의 구분이 있었을 뿐아니라 이미 良身分중에서 國家의 官職體系와 일정한 連繫를 맺고 있는 兩班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兩班은 文班과 武班의 두 班列을 의미한다. 따라서 文班이나 武班에 소속된 官료들을 兩班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兩班은 文武 官僚자신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家族·家門에까지 擴散된 하나의 支配身分概念으로 쓰이게 되었다. 論者중에는 이 시기의 兩班은 단순한 文·武官僚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축도 없지 않으나 家父長的인 家族制度에 있어서 일단 國家의 官職을 얻어 文·武兩班官僚의 자리를 차지한 바 있는 사람의 家門은 科擧나 蔭職을 통하여 계속 兩班身分을 지켜 왔

* 國民大學 助教授 (國史學專攻)

던 것이다. 이는 각 有名氏族의 族譜를 통해서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것이다.

良人신분과 賤人신분은 신분의 狀態를 말한다. 良人신분은 신분적으로 국가의 公的인 지배만을 받는 자유민을 의미하고 賤人신분은 관청이나 양반에게 사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비자유민이다. 그러므로 兩班과 中人은 良人身分 가운데의 특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一般民을 의미하는 良人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士族 士大夫 縉紳 士林 衣冠子弟로 불리우기도 하는 兩班이나 常人 庶人 良民 平民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良人, 賤類를 의미하는 賤人이라는 身分概念은 고려시대부터 널리 쓰이고 있었는데 비하여 中庶 中流로 불리우던 中間階層으로서의 中人이라는 身分概念은 15세기 이후부터 서서히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成宗實錄 卷67 成宗 7年 5月丁亥條에

「不正之女 中人羞與爲妻 士大夫相窺妻妾云云」

이라는 기록이나, 成宗實錄 卷130, 成宗 12年 6月 甲子條에

「風俗旣正 中人以下 皆自免而爲善」

이라는 기록에서 우리는 中人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나는 中人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身分階層으로서의 中人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道德的 品格으로 보아 中等人이라는 의미를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人格的인 中等人을 士大夫와 對稱하고 있다는 것은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 中人이 身分階層으로서의 中人을 포함하는, 人格的으로 조차 士大夫와 구별되어야만 했던 15세기 이후의 中人身分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호한 中人概念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보다 명확한 身分概念으로 정착되게 된다. 李重煥의 擇里志總論에

「宗室與士大夫爲朝廷縉紳之家 下士大夫則爲鄉曲品官中正功曹類 下此爲士庶及將校譯官等員醫官方外閑散人 又下者爲吏胥軍戶良民之層 下此爲公私賤奴婢矣 自奴婢而京外吏胥爲下人一層也 庶孽及雜色人爲中人一層也 品官與士廻大夫同謂之兩班 然品官一層也 士大夫中又有大家名家之限 名目甚多 交遊不相通」

이라는 기록이나, 黃玹의 梅泉野錄 卷 61, 上(p.41)에

「國制 門地有定品 京師尤甚 士大夫爲一等業仕官 中人爲一等業象譯常漢爲一等業商販僕隸 惟中下等名目最多 外象譯而有醫家陰陽家律學曆學寫字學各司胥吏各道邸戶 各世其業 統稱中人」

이라는 기록들이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새로운 사실에 접하게 된다. 하나는 中人이 醫·譯·算·律·曆·寫字 등 技術官과 胥吏·鄉吏 등 吏胥 및 庶孽·將校·其他雜色人을 包括하는 下級支配身分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과, 良人과 賤人의 구별이 없어지고 下人 또는 常漢으로 불리우게 되었다는 점이다. 良人과 賤人의 구별을 뚜렷하게 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들의 處地가 社會經濟的으로 비슷하게 되어간데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분계층으로서의 中人の 成立도 반드시 朝鮮後期까지 기다려서가 아니라 이미 15세기경부터 兩班과 區別되는 獨立된 身分階層으로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음) 따라서 朝鮮後期에 쓰여지던 中人이란 身分概念을 소급하여 조선초기의 下級支配層身分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줄 믿는다.

그런데 中人이라는 概念에는 이와 같은 下級支配身分層을 지칭하는 廣意의 中人이외에, 技術官, 또는 黨論에 들지 않은 부류들만을 지칭하는 狹意의 中人の 概念도 있어 온 것이다. 玄鑾의 「中人來歷의 略考」에서는 兩班들이 벌린 黨論에 無關한 者들, 곧 兩班아닌 技術職從事者들을 中人이라 하였고, 備邊可謄錄 第111冊 英祖 18年 10月 11日條에

「祖宗之制 中人及小民 許令居生於朝市近處 以便其生理 此中路之名所以出也」

라 하여 서울의 中心街 朝市近處에 살던 사람, 즉 技術官을 中人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中人也 內容上 반드시 技術官만을 의미하는 애매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다는 銘文은 없다. 市街에 가깝게 사는 商人輩등의 小民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朝鮮前期에 성립된 이와같은 각 身分 相互間에는 婚姻關係, 限品叙用 國役負擔, 職業의 世傳, 居住地의 區別 등 一定한 差別이 있어서 쉽게 넘어설 수 없는 區別이 있었다. 그렇다고 이들 신분상호간에 카스트(caste)적 階級區分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극히 制限된 範圍내에서이기는 하지만 이들 身分相互間에는 약간의 上下移動(social mobility)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朝鮮後期에 이르면 이같은 전기의 身分制가 동요되고 兩班層에서는 여러 層이 생길 뿐아니라 權力은 더욱 폐쇄화 되었으므로 朝鮮時代 身分制의 典型은 조선전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 14·5세기에 있어서의 身分制再編成

그러면 朝鮮時代의 典型的인 身分制가 확립되어 있었던 朝鮮前期에 있어서의 身分制再編成過程에 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朝鮮時代의 身分制는 兩班官僚制라 할 수 있다. 兩班官僚들이 그들의 地主的 官僚的 地位를 지키기 위하여 國王을 頂點으로 하는 權力體系와 身分制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兩班官僚制는 高麗時代부터 점차 발달되어 온 것이다. 고려는 豪族聯合政權으로서 新羅의 骨品制를 대신하여 兩班官僚制를 指向하였다. 支配層인 兩班이 될 수 있는 부류들은 新羅貴族·高麗太祖功臣 및 豪族의 後裔들이었다. 이들은 科擧 또는 蔭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해 온 高麗·朝鮮時代의 支配層이었다. 또한 이들은 국가로부터 이런 저런 계기로 官品 또는 官職을 받는다는 점에서 官僚群, 또는 官僚豫備軍이라고도 할 수 있다. 高麗國家의 입장에서는 中央集權化를 위하여 이들에게 官職, 또는 官品을 지급하게 되

었다. 어떤 契機로든지간에 官僚群에 편입된 자들에게는 일단 官品, 즉 散官이 주어지게 마련이었고, 이 광범한 散官의 연못속에서 身分과 能力과 階梯에 따라 實職, 또는 散職에 임명되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었다. 科擧 蔭仕 軍役 其人役등 어떠한 코스를 통하건 간에 일단 官品을 얻은 散官들은 實職으로 가기전 一定한 期間동안 待期(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들을 閑人, 또는 閑良이라 한다. 閑人은 高麗時代에 兩班뿐 아니라 技術官 吏胥등 全官人중에 官職을 차지하기전 一定한 期間동안 待期狀態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閑良은 吏胥등을 除外한 麗末鮮初의 兩班官職待期者들만을 말하는 것이다. 閑人, 閑良이외에 退職者들도 官品만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散官에 포함된다. 이들을 品官이라 한다. 閑良品官 前銜品官 在京品官 留鄉品官등은 品官을 그 狀態에 따라 區分한 것에 불과하다. 散官群은 곧 品官群이다. 高麗時代의 品官은 처음에는 兩班과 吏胥의 區別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으나 점차 兩班과 吏胥職의 分化가 생기게 되자 나중에는 流品안에 드는 胥兩班品官과 吏胥品官이 엄격히 구분되게 되었다. 吏胥는 점점 流品에서부터 제외 되게 되는 것이다.

高麗國家는 集權化政策을 써서 既成官人 및 在地地主群에게 廣範하게 散官을 지급하고, 또 이들을 懷柔하기 위하여 制限된 實職이외에 同正職 檢校職 添設職 등 各種 散職을 만들었다. 이러한 散職은 되도록이면 많은 受職對象者들을 官僚機構에 포함시키므로써 高麗王朝의 支配體制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高麗時代에는 散職者에게도 비록 實職만은 못하지만 一定한 土地와 祿俸을 支給하였다. 田紫科나 科田法에서 實職者(現職者)이외에 散職者(前職者가 아닌 散職所持者)에게도 土地를 支給한다는 規定이 그것이다. 이들 散職은 散官(品階)을 基準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高麗時代에는 散官과 散職을 가끔 混同해서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엄격한 差異가 있다. 散官은 官僚豫備群일 뿐

이지 官職自體는 아닌데 비하여 散職은 實職은 아니지만 官職은 官職인 것이다. 그러므로 散職者에게는 土地·祿俸等 國家의 反對給付와(이러한 反對給付는 兩班官僚制가 발달한 朝鮮初期에는 없어지게 되지만) 勤務年限計算을 통한 進級の 特權을 賦與받게 되는 것이다. 散官은 官僚社會에 있어서의 地位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이것이 벼슬(官)이다). 高麗·朝鮮社會에 있어서의 모든 禮遇나 上下關係는 이 散官을 基準으로 하였다. 따라서 散官(官階)의 品階와 實職의 品階는 일치하지 않는다. 行·守職을 活用하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高麗一代를 통하여 散官은 물론 散職者의 수는 날로 늘어갔고 實職者는 물론 散職者에게까지도 國家의 反對給付를 支給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수가 幾何級數적으로 늘어나 高麗王朝 滅亡의 한 要因이 된다. 高麗中期的 同正職者의 수가 2萬을 넘었다던가 高麗末 添設職者의 數가 婁萬에 이르렀다는 記錄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들이다.

한편 高麗末 大土地所有者들의 土地兼併 壓良爲賤도 國家의 財政基盤을 고갈시켜 高麗王朝 滅亡의 다른 하나의 要因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麗末鮮初의 새로운 執權層으로 등장한 新興士大夫들은 官制改編과 身分制再編成을 통하여 이 두가지 要因을 改革하였다. 官制改革을 통하여 散職者들에게 주던 國家의 反對給付를 철폐하여 有給散職制를 無給散職制로 바꾸고, 郡縣制改編과 土豪的 鄉吏의 철저한 除去로 새로운 身分制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諸改革은 王朝交替로 표현되었다. 高麗王朝에서 朝鮮王朝로의 轉換은 단순한 王朝交替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 政治·經濟·社會·文化등 各方面에 있어서의 一大 改革이었다. 身分制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麗末鮮初는 대대적인 身分制再編成期였던 것이다.

당시에 있어서의 身分制再編成의 方向은 대체로 다음 두 가치로 집약될 수 있다. 하나는 支配層의 兩分化現象이며, 다른 하나는 良人層의 擴大이다.

먼저 支配層의 兩分化現狀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려왕조 이래로 豪族의 後裔인 鄉吏들은 科擧·胥吏職등 여러가지 社會變動要因을 통하여 그들의 上層(副戶長以上)은 계속적으로 中央官人으로 편입되어 갔다. 즉 戶長層은 官人化되어 가는데 반하여 記官層 色吏層은 그대로 鄉吏身分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물론 官人化된 부류들은 국가의 官品(散官)이나 官職(實職·散職)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고려말에 이르러 官職世界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고려가 멸망하고 만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의 새로운 집권자가 된 新進士大夫들은 이같이 肥大化된 支配階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支配身分중에서 兩班身分을 公定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兩班身分은 그때까지 實職이던 散職이던간에 文·武兩班의 官職을 받은 바 있는 자들로 한정하게 되었다. 고려시대부터 文·武官僚는 雜業이나 吏胥들과는 구별되는 官職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兩班官僚와 雜業官吏·吏胥의 候補者인 散官群, 즉 官人群중에서 實職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閑人으로 통칭하였는데 비하여 조선시대에는 兩班官僚豫備群만을 閑良으로 통칭하였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다시 말하면 閑良은 吏胥와 技術官 雜職人을 제외한 兩班官僚豫備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兩班層의 公定은 支配身分중에서 兩班과 區別되는 中人層의 成立을 의미한다. 이 때에 中人層으로 格下된 身分으로는 鄉吏 胥吏 技術官 庶孽·軍校·土官·驛吏등이 있다. 이들의 中人化過程을 차례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시대에 兩班으로의 진출이 보장되어 있던 鄉吏들이 中人으로 되어 갔다. 고려의 鄉吏는 실로 兩班의 主된 供給層이었다. 이들에게는 文科와 雜科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守令이 파견되지 못한 屬縣·鄉·所·部曲등 任內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으며 職役의 代價로 外役田(邑吏田)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왕조의

集權化過程에서 鄉吏勢力은 점차 抑制되어 麗末鮮初에 이르게 되면 이들에게 부여되어 있던 특권이 대폭 박탈되었다. 文科應試資裕을 三丁一子로 제한하는가하면(뒤에는 이것조차 實効를 거두지 못하였다.) 雜科·明經科出身者들의 免鄉을 허가하지 않았다. 기왕에 관리가 된 자라 하더라도 新王朝의 三品以下(堂下官)의 鄉吏出身官吏는 還鄉시키는 한편 세종 1445년(세종 27년)에는 이들에게 주어졌던 外役田조차 몰수하고 祿俸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郡縣制를 대폭 정리하여 鄉吏가 다스리던 屬縣·鄉·所·部曲等 任內를 혁파하고 群縣의 廢合과 減縮에 따라 鄉吏의 대대적인 이동이 생겼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지방사회에 있어서의 鄉吏의 사회적 권위와 경제적 이익을 크게 격하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郡縣制의 정비와 향리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反對給付의 박탈은 향리의 地主的 地位를 약화시키는 것일 뿐아니라 그들을 일개 地方行政實務者의 地位로 떨어트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世宗實錄地理志 姓氏條에는 鄉吏姓이 續姓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正姓인 兩班姓(土姓)에 대한 續姓인 鄉吏姓으로 구분될 수 있다. 續姓 밑에는 대개 「鄉吏」「皆鄉吏」「今爲鄉吏」「今皆爲鄉吏」「皆爲鄉吏」라는 내용이 附記되어 있어 본래 鄉吏였거나 이때 鄉吏로 된 부류들이 續姓으로 파악된 것을 알 수 있다. 續姓이란 「古籍所無 今據本道開續」이란 뜻인데 이러한 續姓으로 파악된 부류들은 뚜렷한 家門을 가지고 있는 土姓兩班層에서 제외된 鄉吏, 또는 出身이 微微하여 兩班에서 格下된 부류들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鄉吏는 15세기에 결정적으로 그 지위가 격하되어 中人層에 편입되게 된다.

地方行政實務者들인 鄉吏뿐아니라 中央行政實務者들인 胥吏나 技術職從仕者들인 技術官들도 中人으로 格下되었다. 胥吏와 技術官은 고려시대만해도 兩班과 일정한 區別은 있었으나 조선시대처럼 뚜렷한 差別은 받지 않았다. 胥吏들도 守令으로 進出할 수 있었고 技術官도 兩班의 官

職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麗末鮮初에 이르러 胥吏가 上級胥吏인 錄事와 下級胥吏인 耆吏로 정리되면서 胥吏職은 兩班職과 엄격하게 구별되고 胥吏의 身的地位도 兩班과 구별되는 中人으로 되게 되었다. 錄事 중의 일부가 守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兩班 蔭子弟들의 出世道具로 이용되었을 뿐이고 그것도 六品에 限定된 것이었다. 계속적으로 隱退하기 위해서는 다른 契機를 잡아야 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이 職制는 兩班의 職制와 달라 그 任用 陞進방법이 判異하였다. 이들은 科擧가 아닌 取才(四孟朔取才)로 任用되었으며 兩班職보다 훨씬 긴 勤務年限을 지나야 승진할 수 있었고 그나마도 叅下官까지에 불과하였다. 약간의 祿俸은 받았으나 科田의 支給은 없었다. 또한 兩班에 대하여는 엄격한 服從義務가 규정되어 있었다.

技術官은 비교적 兩班과의 차별이 적은 편이었으나 15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이들에 대해서까지도 차별대우를 엄격히 하게 되었다. 양반들이 技術官을 「不齒士類」「非士族」이라하여 兩班官職으로의 진출을 봉쇄하는 한편 技術職의 限品을 正三品堂下官에 묶어 놓았다. 간혹 功勞 있는 醫官이나 譯官에게 國王이 堂上官을 주는 수는 있으나 정식 職制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때마다 兩班官僚들의 심한 반발을 받게 된다. 또한 이들에게는 文武科·生員·進士試에의 응시자격이 내용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대신 雜科를 보고 技術職을 世傳하며 兩班과의 婚姻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비록 取才試驗이 자주 있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職制에는 遞兒職이 있어서 6個月마다 交替되고 승진에 필요한 勤務年限도 길어 좀체로 빨리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兩班層의 무제한한 增大를 막기 위하여 兩班의 妾子孫인 庶孽에 대해서도 철저한 차별대우를 加하게 되었다. 太宗朝에 구체화된 庶孽差待法 庶孽禁錮法 再嫁禁止法등이 그것이다. 妾子孫들에게는 科擧應試資格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官職으로 나갈 때는 技術官과 같이 正三品堂下官이 限品이었으며 兩班官職을 가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이와같이

庶孽들도 兩班에서 淘汰되어 下級支配身分으로 格下된 中人層으로 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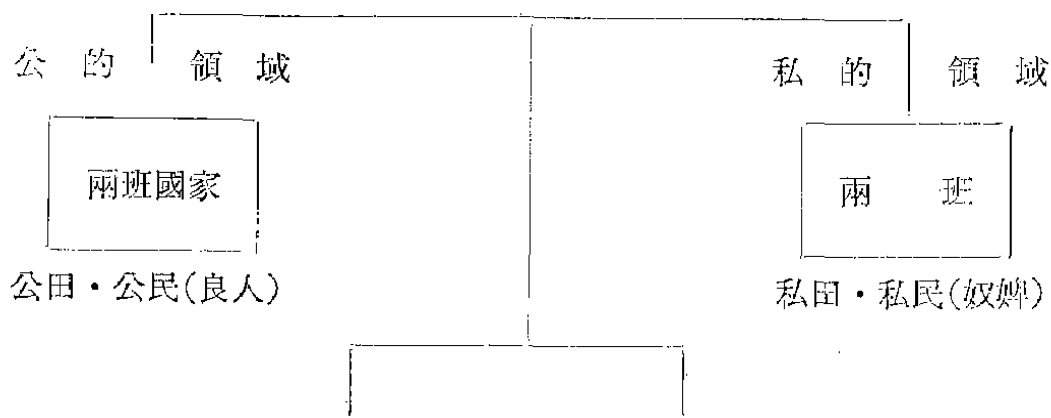
鄉吏 胥吏 技術官 庶孽뿐아니라 軍校 土官 驛吏등도 점차 中人身分層으로 되어 갔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中人層을 구성한 身分은 비단 위에 열거한 兩班層으로부터 淘汰 格下된 부류들만이 아니라 良人層에서 上昇한 부류들도 있었다. 書吏歲貢으로 胥吏나 技術官이 될 수 있는 良人校生이나 無役平民들이 그 例이다. 이것은 身分移動의 하나의 例이기도 하다. 물론 中人層에 포함되는 신분들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兩班이나 良人과 구별되어 오다가 15세기에 이르러 法制的으로조차 구별이 되는 獨立된 身分層으로 되어 간 것이다.

다음은 良人層擴大政策에 관해서이다. 조선왕조의 새로운 집권층이된 麗末鮮初의 新興士大夫들은 公權을 강화하고 私權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貴族 寺院 土豪등 大土地所有者들의 勢力을 삭감시켜 왔다. 田制改革 寺院汰斥 元惡鄉吏의 除去등이 그러한 조처였다.

兩班과 兩班國家는 相互保險的인 관계에 있었다. 兩班地主들은 그들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를 지키기 위하여 兩班國家를 만든 것이다. 兩班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私田 私民(奴婢)이 있어야 하는데 비하여 兩班國家의 사회·경제적 기반으로서 公田과 公民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兩者는 경우에 따라 利害關係가 상충되는 수가 있었다. 私權이 강화되면 公權이 약화되고, 公權이 강화되면 私權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權과 私權이 均衡을 이루었을 때 社會는 '安定'되게 마련이었다. 이를 간단히 圖解하면 다음과 같다.

14세기는 私權이, 15세기는 公權이 전형적으로 강화되는 시기였다. 14.5세기의 田·民辨正事業은 私權→公權을 위한 극가적 노력이었다. 公權과 私權이 다 같이 兩班層의 利益과 관계 있는 것이지만 私權이 公權



보다 늘어나기 쉬운 것이 보통이었다. 兩班의 私權을 약화시키고 公權을 강화하는 정책의 절정은 王朝交振로 표현되었다. 조선왕조의 執權兩班들은 新王朝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私權領域에 속하는 私田 私民을 公的領域에 속하는 公田과 公民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길만이 國家와 社會를 安定시키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중 身分再編성과 관계가 있는 것은 私民의 公民化이다. 私民의 公民化政策으로는 奴婢化된 良人을 良人化하는 奴婢辨定事業, 太宗·世宗朝의 대규모 寺刹汰斥에 따른 僧侶의 還俗, 才人·禾尺등 流浪民들의 新白丁으로의 定着, 良·賤不明者나 良賤交嫁所生을 一賤則賤의 身分原則을 일시 무시하면서까지 이들을 身良役賤으로 設定하여 補充隊에 소속시켜 1,000일만 복무하면 良人化시켜 주는 조치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身良役賤으로 된 자들이 20萬丁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 新良人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 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하여 15세기에는 奴婢 및 巫覡등 일부 賤人을 제외한 良·賤不明한 身分層이 종국적으로 良人化하게 되어 良人과 賤人의 수가 비슷한 정도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또한 15세기 조선왕조의 人的資源과 경제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여 조선초기에 있어서의 領土擴張과 文化의 발달을 가져 올 수 있게 한 것이다.

3. 各 身分相互間의 關係

조선사회는 兩班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모든 法制는 支配層인 兩班의 特權을 규정하고 있었다. 政治權力뿐 아니라 社會的權威도 身分的 特權으로서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身分制는 兩班이 主體가 되는 兩班制社會였다. 조선사회를 兩班制社會로 파악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高在國氏는 그의 「兩班制度論」에서 이미 조선사회를 兩班制社會로 규정하고 있는데(學風 通卷 13號) 매우 흥미있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兩班은 그들의 身分的 特權을 國家의 官僚機構를 통하여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身分制는 兩班官僚制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兩班官僚制가 조선시대에 와서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라 高麗時代부터 부단히 발달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身分제도 종국적으로 兩班官僚制를 指向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新羅의 骨品制를 대신하여 끊임없이 兩班官僚制를 指向하고 있었던 고려시대는 兩班官僚制의 準備期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高麗社會를 貴族制社會 또는 官僚制社會로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兩者를 一義的으로 相反되는 制度로만 파악할 수 없다. 官僚制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貴族制的인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官僚制가 강력한 中世的 身分과 門閥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어 온 폐쇄적인 상태에서 貴族制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科擧의 실시가 반드시 官僚制를 뒷바침해 주는 근거일 수만 없듯이 門蔭이 貴族制를 합리화해 주는 근거일 수도 없다. 科擧에도 身分的 制限이 작용하며 門蔭도 官位와 官職의 高下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官僚制의 範圍內에서 運用되었다. 더구나 貴族制나 官僚制나 하는 것은 歷史的인 概念이 아니다. 따라서 高麗·朝鮮社會를 兩班制社會, 또는 兩班官僚制社會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兩班은 經濟的으로는

대체로 地主層이고, 政治的으로는 官僚層으로서 위로는 國王을 모시고 아래로는 佃戶인 良·賤農民을 지배하고, 行政使役人인 中人을 役使하여 朝鮮王朝를 운영해 온 最高支配身分層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사회의 身分制를 이해하려면 兩班과 다른 身分層과의 관계를 構造的으로 파악하는 것이 捷徑이다.

그러면 먼저 兩班과 國王과의 관계를 알아 보자. 조선왕조는 兩班地主層의 공동의 利益을 保障하기 위하여 세워진 兩班國家라 하였다. 따라서 兩班層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이며 특정한 몇몇 兩班들이 권력을 獨占, 또는 寡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격되었다. 權力이 排他的인 屬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兩班相互間에는 權力의 獨·寡占을 서로 規制할 필요가 있었다. 三朝實錄에 點掇하는 각종 彈劾記事는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며 비교적 兩班制가 均衡적으로 발달된 조선전기에 있어서는 어떠한 權力者도 權座를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였던 것도 이러한 特性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兩班의 政治權力을 集中시키고 命令의 出處를 單一化하기 위하여 國王의 存在가 필요하였다. 國王은 權力의 頂上으로서 最高權力者 最高命令者였다. 모든 國事의 最終決定者인 동시에 對內·外的으로 國家를 대표하는 絶對者에 가깝다. 國王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命令도 어떠한 權力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國王은 神聖不可侵한 存在이기 때문에 兩班도 國王에 대해서는 忠誠과 奉仕를 다 해야 하며, 國王은 그 代價로 兩班에게 여러 가지 政治的·社會的·經濟的 特權을 反對給付로서 賦與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忠과 孝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儒教的 政治理念은 兩班社會의 이데올로기로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國王은 실제로 國家權力을 마음대로 行使할 수 있는 專制者는 아니었다. 國王이 最高權力者 最高命令者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權力과

命令은 양반에 의하여 철저히 制約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政策이 國王自身만에 의하여 立案되는 것이 아니라 兩班官僚에 의하여 대부분 立案되었으며, 立案된 政策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兩班官僚의 意思가 作用하였다. 만일 國王이 專制的 性格을 띄워 國事를 멋대로 처결한다면 兩班官僚들의 심한 反撥을 받게 된다. 빗발치는 兩班들의 上疏라든가, 臺諫의 直諫, 史官의 直筆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들은 儒教的 名分論과 歷史觀을 들어 國王의 處事를 制禦하였다. 兩班知識人·官僚들은 풍부한 經典知識과 故事를 동원하여 儒教政治를 구현해 나아갔다. 만약 直諫이나 直筆로 國王의 專制를 막을 수 없을 경우에는 反正을 일으켜 國王을 交替하는 수도 있었다. 儒教的 革命思想은 이를 합리화해 주는 根據가 되곤 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兩班의 政治的 權威는 皇帝의 專制權이 강하였던 中國(특히 唐)과 비교하면 特記할만한 것이고 이것이 朝鮮兩班制의 特性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國王은 兩班國家의 首長인 동시에 兩班官僚의 代辦者이고, 兩班政權의 象徴이라 하겠다.

다음은 兩班과 中人과의 관계이다.

朝鮮王朝는 官僚國家였기 때문에 이를 運營하는데는 많은 行政實務者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行政實務者들은 주어진 行政實務를 機械的으로 수행할 뿐, 兩班의 領域인 政策立案에 關與할 수 없었다. 兩班이 政策立案者인데 비하여 中人是 行政實務者이며, 兩班이 上級支配身分인데 비하여 中人是 下級支配身分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兩班과 中人的 本質的인 차이였다.

그런데 現代官僚制에서와는 달리 兩班은 中人을 行政的으로 뿐만 아니라 身分的으로 이들을 지배하였다. 이 또한 兩班官僚制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中人的 職務와 陞進은 兩班에 의하여 철저히 制限되었으며 그들의 職種이나 身分은 代代로 世傳되었고 婚姻關係도 그들

끼리 맺게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中人이 비록 양반의 支配를 받았으나 그들도 支配身分의 일부로서 그들이 世傳하고 있는 行政能力이나 技術知識을 통하여 兩班에 못지 않은 知識과 經濟力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나름대로의 特徵的인 生活樣式이나 思想方式을 가지고 있었다. 行動이 민첩하고 깔끔하며 利害關係에 밝고 對人關係에 능하였다. 독특한 詩文과 技術知識, 특수한 文書樣式 등은 中人階層만이 享有하고 있었던 中人文化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中人들은 兩班에 못지 않은 才能과 實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兩班들에 의하여 社會的 差別待遇를 받아 왔다. 그들은 兩班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었으며, 觀念的으로 賤視되는 技術職이나 複雜하고 辱을 먹기 쉬운 對民業務를 一線에서 담당하여야 하였다. 그러면서도 吏役은 兩班들에 의하여 賤視되었으며 兩班이나 良·賤農民들에게 惡名높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國家의 對民搾取業務를 그들이 專擔하고 있기 때문이다. 兩班官僚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비난받기 쉬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詩文을 즐기며 그들을 조종하여 儒教的 正道政治를 표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中人은 두 가지 特徵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 즉 中人은 결국 支配階層에 속하였으므로 良·賤農民을 搾取하는데 있어서는 兩班과 利害를 같이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받고 있는 社會的 差別待遇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兩班에게 對抗하기도 하였다. 後者보다 前者가 더 기본적인 矛盾이기는 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 兩班과 兩班國家의 均衡이 깨지게 되자 鄉吏·庶孽등의 身分解放運動이 치열해지게 된다. 英祖朝의 98戶張疏나 正祖朝의 庶孽許通 등은 그 대표적인 例가 될 것이다. 특히 鄉吏는 양반세력을 등에 업고 농민을 착취하는데 앞장서 東學軍들의 지탄대상이 되지만 때로는 民亂軍과 內通하여 官衙를 습격케 하는 二重的인 서겨우 가지고 있었다. 中人주에서도 技術官들의 바깥의 가자

微溫的이었다. 그들은 中人의 最上層으로서 다른 부류들보다는 많은 特典을 賦與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傳受하고 있는 知識이 近代文明에 가깝고 兩班보다 덜 保守的이기 때문에 劉大致 吳慶錫등과 같이 近代化의 先驅者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中人層은 兩班의 다음가는 第二支配身分으로 뒤에 兩班에서 떨어져 나오는 鄉班·殘班들과 良賤農民에서 成長해오는 第三階層과 함께 韓末 近代化에 先峰을 선 身分層이었다. 따라서 朝鮮身分制에 있어서 이들의 實體를 究明하는 일은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兩班과 良·賤農民과의 관계이다. 良·賤農民은 自作農도 상당히 있었지만 대부분이 兩班의 佃戶였다. 兩班은 이들을 經濟的으로 뿐만아니라 身分的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農業을 根本으로 삼고 있던 朝鮮社會에 있어서 兩班의 良·賤農民支配는 가장 基本的인 것이었다. 留鄉所·鄉約·社倉·鄉廳등도 鄉吏勢力을 規制하기 위한 것일 뿐아니라 農民支配를 철저히 하기 위한 在地地主聯合體的 性格을 가지는 것이었다.

良·賤農民중에서 良人은 國家에 일정한 田稅 力役 貢物을 바쳐야 하였다. 兩班도 國家에 대한 의무는 良人과 法制的으로 다른 바 없으나 실제로 兩班은 田稅를 제외한 諸負擔에서 合法的·非合法的으로 빠지고 있거나 良人과는 다른 特別待遇를 받고 있었다. 國家의 官吏가 되거나 官學의 學生이면 合法的으로 國役을 免除받았고 그 밖의 兩班들도 그들의 社會的 地位나 經濟的 富를 이용하여 非法的으로 이를 免除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兩班들의 國役代立現象은 16세기의 布納化를 招來하였고 양반들의 貢物納付는 免除되게 되었다. 이러한 兩班의 特權은 社會的 身分的으로 그들을 더욱 良·賤農民과 區別되게 하였다. 兩班身分이면 이와 같은 特權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시 사람들은 兩

班이 되길 원했지만 양반이 되기 위해서는 儒教教養 官職 道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高麗時代부터 傳統的인 家系와 經濟的 富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兩班이 되기 어려웠다. 또한 15세기에 일단 兩班으로 公認된 사람들도 점점 家門이 微衰해 가면 종국에 가서는 兩班家門에서 떨어져 中人 혹은 良·賤人으로 되고 마는 것이다.

良人은 法制的으로는 權利 義務가 兩班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農業社會에 있어서 基本幹農民層인 良人에 대한 懷柔的 法制요 原則論에 불과하다. 그러나 良人은 사실상 法制的으로 兩班과 같은 權利·義務를 누릴 수는 없었다. 良人이 兩班과 다름 없는 權利 義務를 누렸다는 증거로서 教育·科擧·軍役의 例를 들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우선 良人들은 실제로 教育과 科擧에 종사할 能力이 없었다. 거기에는 많은 時間과 經費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부터 勢力있고 넉넉한 地主的 地位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兩班이나 中人으로 올라 갔고 零細한 土地와 微微한 家門을 유지해 온 사람들이 良人으로 처져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14세기 大土地所有者들의 奴婢로 전락했다가 良人으로 환원된 新良人이나 身良役賤들은 土地없는 單弱한 농민들이었다. 이들이 教育과 科擧에 종사할 수 있기는 어렵기만 하였다. 간혹 經濟的으로 능력있는 良人이라 하더라도 科擧에 응시하는데는 많은 制限을 받았다. 文·武科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應試資格에 四祖內의 顯官有無를 따진다는가, 骨髓兩班인 各部員이나 京在所兩班의 추천서를 제출케 하는 것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良人이 兩班으로 上昇하는 길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나 쉬운 길은 아니었다.

軍役도 兩班과 良人이 국가의 公民인 以上 다 같이 져야 했지만 兩班이 지는 軍役과 良人이 지는 軍役은 같은 것이 아니었다. 兩班軍役은 官職과 直結되거나 兩班政權을 지키는 中央軍이 되는데 비하여 良人의 軍役은 國防軍 庸役軍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良人에 대한 法制的 規定은 外面的으로는 兩班과 다름없는 權利와 義務를 가지는 것처럼 되

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많은 制限이 가로 놓여 있었던 것이다. 兩班, 또는 中人과 良人이 구별되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教育이나 科擧에 있어서 中人에 대한 制限規定은 嚴格하련서도 良人에 대한 制限規定이 보이지 않는 것은 良人이 教育이나 科擧應試對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論議할 餘地가 없었던 데도 이윅가 있는 것이다.

15세기에는 良·賤農民의 地位가 경제적으로 접근한 시기였다. 14세기에 많은 良人이 奴婢化되었다가 還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身分的으로는 엄격한 차별이 있었다.

賤人은 國家에 소속되는 公賤과, 兩班등 個人에 소속되어 있는 私賤으로 구분된다. 公賤도 國家自體보다는 公共機關에 個別的으로 所屬되어 있었다. 특히 私賤은 兩班地主의 私有物로서 賣買 相續 讓與가 가능하였다. 이들은 兩班의 社會的 權威와 經濟的 利益을 保障해 주는 兩班社會에 있어서 不可缺한 존재였다. 兩班國家의 立場에서 中外에 布列되어 있는 兩班들은 극가의 藩屏으로 여겼다. 국가의 藩屏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兩班의 私的 勢力基盤인 奴婢制度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梁誠之의 말은 이러한 思考方式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奴婢制度는 兩班社會에 있어서 聖人의 禮樂과 함께 萬世不變의 原則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高麗末 元나라의 奴婢制撤廢要求에 대하여 兩班의 生計가 곤란해진다는 이유로 이를 극력 반대한 것이라던지, 一賤則賤(父母들 중의 하나가 奴婢면 그 자손은 무조건 奴婢가 되게 하는 法制)의 奴婢量産을 위한 法制를 만든 것 등도 이러한 兩班制社會의 特性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奴婢는 服從과 賤役만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人間으로서의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奴婢의 賣買 典當 相續 讓與가 행해지고 있었다든가 奴婢에 관한 諸規定이 刑典에 記載되어 있다던가, 家畜과 마찬가지로 賤者隨厓法에 따라 奴婢는 어머니의 上典의 소유가 되는 것

등은 그러한 處地를 반영한 것이다. 奴婢는 兩班의 私有物인 만치 奴婢의 上典에 대한 反抗은 網常犯으로서 極刑에 처하게 되어 있었다. 한편 兩班의 奴婢에 대한 처벌은 刑殺을 제외하고는 許可되어 있었다. 奴婢 중에도 外居奴婢보다는 率居奴婢가 더욱 심한 隸屬狀態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奴婢에 대한 處遇가 西洋古代의 奴隸와 같이 철저히 非人間的 待遇는 아니었다.

奴婢所有는 비단 兩班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良人, 또는 심지어는 奴婢가 奴婢를 소유하는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奴婢所有者는 兩班이었다. 兩班은 一人當 奴婢數에 있어서 단연 良·賤人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았던 것이다. 外居奴婢는 그들의 上典에게 一定量의 身貢을 바치고 上典, 또는 다른 地主의 土地를 佃作하는 獨立家計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비하여 率居奴婢는 上典의 집에 함께 살면서 家內雜役을 맡았다. 이와 같이 奴婢는 國家에 대한 一切의 負擔이 免除되는 대신 兩班에게 身貢을 바치거나 兩班의 社會的 權威와 經濟的 利益을 保障해 주는 조선시대의 最下身分層이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身分制度는 最高支配身分인 兩班이 위로는 最高權力者·最高命令者인 國王을 擁立하고 아래로는 行政實務者·技術職從事者인 中人層과 農民層인 良·賤人을 지배하는 兩班制라 하겠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兩班制는 高麗時代 以來로 점차 發達되어 15世紀에 이르러 일단 整備되었다가 이후 서서히 崩壞되어 近代的인 身分制度로 移行하게 되는 것이다.